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2

제출년월일 : 200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평생교육체육과

□ 개정사유

- 현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題名)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개정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함(안 조례 제명).
-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교습중지명령 방법 등을 신설(안 제9조의2).
- 학원의 시설규모의 분야중 입시·검정란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며, 동 교습과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60m' 이상으로 함(안 별표 1).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자동차 운전 부분을 삭제함(안 별표 2).
-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함(안 별표 3).

□ 개정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2001.4.7.법률제6463호: 2001.7. 8. 시행)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제6392호 : 2001. 6. 30. 시행)

□ 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관계법령말해서 : 붙임
-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중 입시·검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시 설 규 모 |
|--------------|------|------|--|
|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 m ² 이상, 기타지역 150 m ² 이상 |
| | | 입시단과 |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 m ² 이상, 기타지역 60 m ² 이상 |
| | | 보충학습 | 강의실 연면적 60 m ² 이상 |
| | | 검정고시 | 강의실 연면적 90 m ² 이상 |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산업기반기술계열, 교습과정중 “2. 자동차(2-4,자동차운전)”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직업기술분야, 산업기반기술계열, 교습과정의 2. 자동차중 “자동차운전”부분을 삭제한다.

부 록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u> | <u>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u>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u> |
| 〈신설〉 | 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 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현 행

[별표 1]

학 원 의 시 설 규 모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
|-----------|----------|--|--|
| 직업 기술 | | (생) | 략) |
| 국제 실무 | | (생) | 략) |
| 인문· 사회 | | (생) | 략) |
| 경영 실무 | | (생) | 략) |
| 예능 | | (생) | 략) |
| 입시· 검정 | 보통 교과 | 중학교 및 고등 학교의 교육과 정에 속하는 교 과로서 예·체 능 및 실업계고 등학교의 전문 교과 제외 | 입시 종합 : 강의실 연면적 시지역 210m' 이상, 기타지역 150m' 이상 |
| | | | 입시 단과 : 강의실 연면적 시지역 90m' 이상, 기타지역 60m' 이상 |
| | | 〈신설〉 | 〈신설〉 |
| | 검정 | 고시 | 강의실 연면적 90m' 이상 |
| 독서실 | | (생) | 략) |
| [비고] | | (생) | 략) |

개 정 안

[별표 1]

학 원 의 시 설 규 모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
|-----------|----------|--|---|
| 직업 기술 | | (현 행 과 | 같 음) |
| 국제 실무 | | (현 행 과 | 같 음) |
| 인문· 사회 | | (현 행 과 | 같 음) |
| 경영 실무 | | (현 행 과 | 같 음) |
| 예능 | | (현 행 과 | 같 음) |
| 입시·검정 | 보통 교과 | 입시종합 시지역 210m' 이상, 기타지역 150m' 이상 | 강의실 연면적 시지역 210m' 이상, 기타지역 150m' 이상 |
| | | | 입시단과 시지역 90m' 이상, 기타지역 60m' 이상 |
| | 보충학습 | | 강의실 연면적 60m' 이상 |
| | 검정고시 | | 강의실 연면적 90m' 이상 |
| 독서실 | | (현 행 과 | 같 음) |
| [비고] | | (현 행 과 | 같 음) |

| 현 행 | | 개 정 안 | |
|---|--|---|-------------|
| [별표 2] 실험·실습·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 [별표 2] 실험·실습·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
| 교습과정 | 시설·설비 및 교구 | 교습과정 | 시설·설비 및 교구 |
| 1.~2-3. | (생 략) | 1.~2-3. | (현 행 과 같 음) |
| 2.자동차 (2-4. 자동차운전) | <u>가. 시 설</u> (1) 강의실 66m' 이상 (2) 점비장 66m' 이상 (3) 주차시설 75m' 이상 (4) 기능교육장은 6,600m' 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m' 이상,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m' 이상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결 차도의 넓이가 7m 이 이상이어야 함) | <u>〈삭제〉</u> <u>〈삭제〉</u> | |
| | <u>나. 설비 및 교구</u>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15)에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 (2) 기능교육장 일시수용인원 1인에 1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300m'당 차량 1대 이내 (단,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이어야 함) | <u>〈삭제〉</u> | |
| |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 | (이 하 생 략) | | (현 행 과 같 음) |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교습과정 | 일시수용 능력인원 | 비 고 | 교습과정 | 일시수용 능력인원 | 비 고 |
| [별표 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 | | [별표 3]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 | |
| 1.기 계 | (생) | 략) | 1.기 계 | (현 행) | 과 같 음) |
| 2.자동차 | | | 2.자동차 | | |
| · 자동차 | 40 | 실습실60m'기준 | · 자동차 | 40 | 실습실60m'기준 |
| 정비 | | | 정비 | | |
| · 중기운전 | 30 | 실습실990m'기준 | · 중기운전 | 30 | 실습실990m'기준 |
| · 중기정비 | 30 | 실습실45m'기준 | · 중기정비 | 30 | 실습실45m'기준 |
| · 자동차 | 기능교 | 가. 제1종 보통 및 | 〈삭제〉 | 〈삭제〉 | 〈삭제〉 |
| 운전 | 육장면 | 제2종 보통반 : | | | |
| | 적 및 기 | 당해 기능교육장 | | | |
| | 능코스 | 부지면적 300m' 당 | | | |
| | 규모에 | 1인이내 | | | |
| | 따라산 | 나. 대형 및 특수반 : | | | |
| | 정 | 당해 기능코스 1조 | | | |
| | | 당 2인이내 | | | |
| | | 다. 제2종 소형 및 | | | |
| | | 원동기 장치 | | | |
| | | 자전 | | | |
| | | 거 반: 당해 기능 | | | |
| | | 교육장 부지면적 | | | |
| | | 50m'당 1인 | | | |
| (이) | 하 | (생) | (현) | 행 | 과 같 음) |
| | | 략) | |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01.4.7 법률 제6463호)

| 연번 | 주 요 개 정 내 용 | 비 고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명칭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함(법률명).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전관련학원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2001.6.30 시행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 조항 신설(제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조항 신설(제4조제2항). ○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 근거조항 신설(제16조제3항). ○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계속하는 경우 교육감은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를 하니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3호). ○ 현직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외교습 금지조항을 삭제하는등 실효된 조문을 정리함(제3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 연번 | 주요개정내용 | 비고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습소에서 보통교과의 교습인 국어, 영어, 수학 등 1과목만 신고 가능(제3조 제2항 삭제).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유해업소로부터 보호 범위에 초등학생 보통교과 교습 학원 포함(제4조).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개정 (제7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고유기능이 정규학교의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분야란 중 "입시·검정"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변경하고, - 교습과정에서 초등학생의 보통교과 교습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단위시설 중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에 대한 칸막이 최소규격인 15m'(음악 3m')를 삭제하여 강의실 규제 완화(제9조).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내용 및 변경신고 내용 신설(제16조의2).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및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제20조). | |

관계법령발췌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6463호 '01.4.7)

第1條 (目的) 이 法은 學院의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學院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學院"이라 함은 私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學習者에게 30日이상의 教習課程(敎習課程의 반복으로 教習日數가 30日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知識·技術(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藝能을 敎習하거나, 30日이상 學習場所로 제공되는 施設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施設을 말한다.
 - 가. 教育法 기타 法令에 의한 學校
 - 나. 圖書館 및 博物館
 - 다. 事業場등의 施設로서 所屬職員의 研修를 위한 施設
 -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삭제>
 - 바.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2001.1.26. 도로교통법개정법률 제6392호, 2001.6.30부터 시행)
2. "敎習所"라 함은 제4호의 規定에 의한 課外敎習을 하는 施設로서 學院이 아닌 施設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課外敎習"이라 함은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의 學生이나 學校入學 또는 學力認定에 관한 檢定을 위한 受驗準備生에게 知識·技術·藝能을 敎習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第1號 각목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서 그 設置目的에 따라 행하는 敎習行爲
 - 나. 동일 戶籍내의 親族이 하는 敎習行爲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活動에 속하는 教習行爲
 5. “學習者”라 함은 學院 또는 教習所에서 學習을 받거나 30日以上 學習場所로 제공되는 施設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第4條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學院을 設立·운영하는 者(이하 “學院設立·運營者”라 한다)는 自律과 創意로 學院을 운영하며 學習者에 대한 편의제공·負擔輕減 및 教育機會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擔當者로서의 責務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第8條 (施設基準) ① 學院에는 教習課程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라 教習 및 學習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른 教習過程別·地域別 施設規模 및 設備基準을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의 條例는 施設規模의 下限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6條 (指導・監督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教育監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學院設立·運營者 및 教習者에 대하여 施設·設備, 受講料等, 教習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統計資料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그 施設·設備, 帳簿 기타의 書類를 檢查하게 할 수 있으며, 施設·設備의 개선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出入·検査를 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19條 (學院등에 대한 措置) ① 教育監은 第6條 또는 第14條의 规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學院 또는 教習所를 設立·운영하거나 第17條의 规定에 의하여 學院의 登錄 抹消 또는 教習所 廢止의 처분을 받거나 教習의 정지처분을 받은 學院 設立·運營者 또는 教習者가 계속하여 教習하거나 學習場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院 또는 教習所를 閉鎖하거나 教習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당해 學院 또는 教習所의 看板 기타 標識物을 제거하거나 學習者的 出入을 제한하기 위한 施設物의 設置

2. 당해 學院 또는 教習所가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施設이거나 第17條의 规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받은 施設임을 알리는 揭示文의 附着

② 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措置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措置를 행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22條 (罰則)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处한다.

1. <삭제>

2. 第6條의 规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學院을 設立·운영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 规定에 의한 登錄를 한 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③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教習所를 設立·운영한 者
 2. 第1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看板 기타 標識物의 제거 또는 設置物의 設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揭示文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者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第23條（過怠料）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2項에 의한 講師의 年齡·學歷·專攻科目 및 經歷등에 관한 人的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者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반하여 受講料 등을 허위로 게시한 者
 6.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監이 賦課·徵收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教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教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② <삭 제>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

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 제>

-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흙판면의 조도가 150lux 이상일 것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8. (삭제)

9. (삭제)

- ②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②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 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 ②<삭제> (도로교통법시행령 부칙)
-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별표1] 학원의 교육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 | 산업용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페아노조율, 사진 |
| | 정보처리기술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국체화 | 문화관광 |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 | 외국어 | 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경영 실무 | 경영 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 | 사무 관리 |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
| 예능 | 예능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꽂기예 |
| 입시·검정 ·보충학습 | 보통 교과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 독서실 | 독서실 | 독서실 |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육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 도로교통법 (2001.1.26. 법률 제6392호 2001.6.30 시행)

제70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3 (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4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5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6 (휴·폐원 신고)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 또는 폐원일부터 7

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7 (교육과정 등)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8 (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제70조의9 (수강료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6·30]]

제70조의10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일 2001·6·30]

- 제70조의11 (지도·감독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